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25.10.16.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로 지정되었으나, 본 주택은 '25.10.15.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해당하여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적용)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986-242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2.02.04.)로부터 3년 이나 기간도과로 전매제한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2.01.11.(화)	2025.12.22.(월)	2025.12.29.(월)	2026.01.02.(금)	2026.01.05.(월)	2026.01.09.(금)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22.(월)**이며 (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6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11.(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1000930**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2.29.(월)	2026.01.02.(금)	2026.01.05.(월)	2026.01.09.(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7길 132, 4층 (미아동 317-19, 광문빌딩)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부분준공)까지 난 주택이며, 견본주택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라 군부대 시설(보안 시설물 등)이 00동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동은 군사보안등으로 향후 안내해드릴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동 동측에 추후 종교시설 및 다세대 주택이 건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4동 남측과 205동 서측에 추후 종교시설 및 균린생활이 건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상세한 내용 등은 북서울자이플라리스 사이트에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xi.co.kr/mi3>)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미아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8~22층 15개동 총 1,045세대[조합 561세대(보류지 6세대 포함), 임대 157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327세대 중 잔여 2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261	01	084.8654B	84B	1	103	203
	02	112.9104	112	1	104	103
	합 계			2	-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동·호수	세대수	공급금액(A)				필수 옵션금액(B)			최종 공급금액 (A+B)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소계(B)			
084.8654B	84B	103동 203호	1	577,533,000	368,467,000	0	946,000,000	19,500,000	6,610,000	26,110,000	972,110,000	97,211,000	874,899,000
112.9104	112	104동 103호	1	728,636,400	464,876,000	46,487,600	1,240,000,000	21,400,000	5,460,000	26,860,000	1,266,860,000	126,686,000	1,140,174,000

- 84타입의 시스템에어컨은 총 4곳의 설치 위치 중 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 112타입의 시스템에어컨은 총 6곳의 설치 위치 중 3대가 설치되었으며, 추가 3대는 매수자가 설치 해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 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나 잔금 납부기한 이후 납부 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 물건은 부분 준공만 받은 물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2.(금). - 2026.01.11(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1.02.(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p>*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1.09.(금)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25.12.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발급용 (발급용도: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변동이력이 있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등(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 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위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사무실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 관련 지자체 공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1.09.(금)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7길 132, 4층 (미아동 317-19, 광문빌딩))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아파트 공급금액 확인 및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개별 통지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1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비구역내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1, 2, 3단지로 구성되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허가를 득한 하나의 주택단지이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통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1단지 : 680세대 (일반분양 203세대, 조합 332세대, 보류지 6세대, 임대 139세대), 지하 3층~지상 22층 8개동 - 2단지 : 276세대 (일반분양 99세대, 조합 177세대), 지하 3층~지상 22층 5개동 - 3단지 : 89세대 (일반분양 25세대, 조합 46세대, 임대 18세대), 지하 2층~지상 13층 2개동 • 본 아파트는 한 개의 단지로 1, 2, 3단지 통합하여 관리비가 정산 되고, 각 단지의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입주자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커뮤니티시설은 1, 2단지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며, 각 단지별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1, 2, 3단지의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은 해당 면적, 시설물, 구성 등이 서로 다르니 분양관련 안내 책자, 견본주택내부 설치된 홍보물(커뮤니티 모형 등), 건축도서 등으로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셔야 하며, 향후 단지별 각종 시설물의 유무, 면적 등 각종 차이를 사유로 추가 설치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1, 2, 3단지 분리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CLUB XIAN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CLUB XIAN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 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 결의 등에 의해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CLUB XIAN 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충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인허가 사항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3년 12월 20일로 소방내진설계가 미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 단지 주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접하고 있어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헨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균린공원, 어린이공원, 종교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 하수시설이 설치 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정화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108, 201, 302동 인근에 정화조 연도가 설치될 예정이나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연도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부지의 특성상 인접 도로와 단지의 Level 차이로 부지 경계부 및 진출입구 주변에 급격한 경사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 차량의 밀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외부 도로의 Level 변경에 따라 단지 Level도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08동 남측, 201동 서측과 종교 부지에는 추후 공공주택이 건립될 수 있습니다.
 - 103, 105, 106동 북측 보차흔용도로는 외부인이 출입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기관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세대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급격한 수용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 학교(서울삼양초등학교와 서울수유초등학교 분산 배정 및 중학교1학교군 내)에 수용 예정입니다.
 - 중학교 학군은 성북·강북 1학교군에 해당합니다.
 - 고등학교 학군은 성북·강북 학교군에 해당합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 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요인 발생 시 학생배정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8, 205, 302동 전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 102, 302동은 임대세대가 배치되어 있고 복도,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공원, 주차장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동의 세대 전후면에 옹벽이 설치되어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단지 북측과 동측에는 어린이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외부, 201동과 202동 사이 외부 계단에 외부 승강기가 설치됩니다.
 - 임대동과 분양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동의 경우 외부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및 공원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단지와 2단지에 각각 설치되나, 운영은 1개소로 통합운영될 수 있습니다 • 38m²A/B, 42m²A/B, 51m²A/B 타입은 복도식으로, 그 외 타입은 계단식으로 시공됩니다.
- 주동 라인별 현관 앞 흘 형태가 다양하므로, 계약시 주동 평면도를 확인 바랍니다.

■ 단지 계획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 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입 경사부 상부 마감으로 저층부 세대의 조망에 방해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선정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계단의 Type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저층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향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단지 모형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레벨차에 의해 데크로 분할 계획되어 있으며, 각 데크의 수직면 및 인접 대지와의 레벨차에 따른 옹벽면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또는 세라믹), 브릭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브릭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부 석재는 2개층 기준이나, 일부 뾰칠 및 적용 부위가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 블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종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동 측벽에는 발주처 협의에 따라 추후 금속마감 및 조명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입면디자인 및 옥탑구조물, 저층부 석재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센터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GX, 라운지, 작은도서관,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실내 골프연습장 등) 및 부속동(경로당 등) 및 일부 공동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및 자연 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은 1,2단지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며, 세부운영방안은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단지별 일반관리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균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및 스쿨버스존 실외기는 각 시설 옥상부 또는 측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설비 및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 검침 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균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동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훈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외부 Elev. Type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시스템이 설치되는 주동은 각 층 공용투입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 진동, 냄새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시스템은 향후 각 세대에 설치될 수도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1,246대, 근린생활시설 27대, 총 1,273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1~2단지, 2~3단지 지하 연결통로는 도로 접용 부과 대상이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 ~ 지하 3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 단지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16개소(1단지 8대, 2단지 5대, 3단지 3대(총 급속 8대, 완속 8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주동별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하 주차장이 상이하고,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 지하 주차장 지하1층의 진입로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2.7m로 승용차 및 일반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하며, 그 외 주행로의 높이는 2.4m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지 간 이동 시 지하1층과 지하2층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및 확인 후 이동 바랍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동별 상이하므로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 102, 302동 주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옥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 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특히 59 Type 이하의 다용도실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공간 Size 확인 후, 설치 바랍니다.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비획장 발코니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별도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통한 인접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면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및분양 모형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9 Type 이하의 안방(침실1) 문폭이 계획상 940mm 이하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창호를 통해 보일러가 노출될 수 있고, 타입별로 가스 인입배관 및 배연 배관 설치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단차 발생)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안방, 그리고 침실의 외부창호는 입면전면창(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합니다.
- 주거동 외벽 두께는 창호 프레임 두께 변경, 장식 줄눈 등의 시공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창호 접합부의 콘크리트면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 분합창 손잡이는 1개소만 설치됩니다.

■ 오픈발코니

- 오픈 발코니는 84m², 112m² 타입 일부 세대에 설치되며 개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오픈 발코니의 옥외공간 바닥은 타일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 발코니 출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건축 기본 마감(방수, 몰탈,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 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오픈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배수는 난간턱의 관통 슬리브(흉구멍)를 통해 배수되며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기타 마감재(거울, 욕조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한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자재 수급 등의 이유로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 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 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 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 종문은 주택형별 사양(개폐 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종문 설치로 인해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 (주방가구, 냉장고장, 불박이장, 세탁선반, 드레스룸 선반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 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특화 옵션, 주방 선택형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자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시스클라인 선택유무 및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 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침실 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까지만 설치되며, 가스 쿡탑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선택 시 인근 천정에 자동식소화기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조합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2.01.11.)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10-82-11153	104-81-18121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7길 132, 4층(미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홈페이지(<https://xi.co.kr/mi3>)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등	국민은행 KB	089501-04-191685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01동 301호 흥길동 → "20010301흥길동", 1001동 1304호 흥길동 → "10011304흥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본주택은 부분준공이 완료된 주택이므로, 견본주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 문의 : 02-986-2427